

제163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

제1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| | |
|---|-----|
| 1.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 | 1면 |
| ○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| 13면 |
| 2.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종로구청장 제출) | 18면 |
| ○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| 21면 |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8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6. 6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 지침(2006.04.19)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, 구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및 생활복지국 폐지(안 제3조제1항)
- 나.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다. 행정관리국, 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 변경
(안 제4조제1항, 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제1항)
- 라. 각 국장 및 소장 업무분장사항 변경
-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제외
- 마. 기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침-1428(2006.04.19)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- 다. 예산조치 : 예산사업
- 총액 : 23,000천원(1개부서 신설에 따른 시설설치 및 이사비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 등) ①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, 본청·직속기관의 과장·담당관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구 본청

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·재정경제국·주민생활지원국·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.

②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.

제4조(행정관리국)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자치행정과,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. 다만,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로 한다.

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인사·조직·보안에 관한 사항

2.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
 3. 동행정에 관한 사항
 4.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5.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
 6.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
 7.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
 8.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9.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
 10.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 11. 예산의 편성·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
 12.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13.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
 14.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
 15. 관인 및 문서에 관한 사항
 16.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
 17. 호적에 관한 사항
 18. 구·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 19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20.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21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22.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23.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조직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24. 생활체육·건강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25. 생활체육·건강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26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 27. 무도장·무도학원의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
 28. 일반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
 29. 여권의 반납, 분실 및 소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
 30. 여권의 물취,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
 31. 다른 국 및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- 제5조(재정경제국) ①재정경제국에 재무과, 산업환경과, 세무1과, 세무2과 및

지적과를 둔다.

②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·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2. 공사의 도급·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
3. 지출 및 세입·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회계검사·공채·직원저축에 관한 사항
5. 시장의 지도·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물가조사·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
7. 연료판매소허가(신고) 및 지도감독(가스류 제외)에 관한 사항
8.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
9.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10. 농·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
11.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특구 활성화
12.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13.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14.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15.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16.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17. 중수도 관리, 저수조 위생지도·감독 및 청소에 관한 사항
18. 세입총괄 및 현계에 관한 사항
19. 세외수입 총괄 및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
20. 재산세·취득세·등록세·지역개발세·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21. 법인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 및 목적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22.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
23. 과세표준액 시가조사 및 책정에 관한 사항
24. 차량취득세·차량등록세·자동차세·면허세·도축세·경주마권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25. 주민세·사업소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26.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
27. 지적전산·지적측량 및 지적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28. 토지 이용처리에 관한 사항

- 29. 택지소유 상한규제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
- 30.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
- 31. 토지거래허가·신고에 관한 사항
- 32.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33.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

제6조(주민생활지원국)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계획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문화진흥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.

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주민생활지원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
- 2.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주민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
- 4.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- 5.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
- 6. 자활·고용에 관한 사항
- 7.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
- 8. 소관 법인의 시설 인·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9.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
- 10.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
- 11.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
- 12. 보육에 관한 사항
- 13.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
- 14.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
- 15.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
- 16. 북한이탈주민의 자립·정착을 위한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
- 17. 문화·예술에 관한 사항
- 18.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
- 19. 종교 및 예술법인에 관한 사항
- 20. 관광에 관한 사항
- 21.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
- 22. 음반,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
- 23. 게임제공업소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

24.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관한 사항
25. 문화재에 관한 사항
26.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
27. 일반폐기물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
28.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29.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
30. 공중변소의 설치·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1.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제7조(도시관리국) ①도시관리국에 주택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

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
2. 시영주택의 관리·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3.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4.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·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
5. 도시계획·도시개발·도심재개발·불량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
6.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·허가(개발제한구역은 제외)
7.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
8. 건축허가·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9.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
10. 건축업자 지도감독
11.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
12. 공원·녹지관리의 총괄
13.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14.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
15.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
16.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
17.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

제8조(건설교통국)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, 토목과, 재난안전관리과,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.

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로·지하도·하천·구거,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2.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3.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
4. 점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5. 토지의 사용·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
6.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
7.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
8.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9.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
10. 지하도·지하광장·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
11. 하수행정의 종합조정
12. 하수도·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·유지관리
13.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
14. 배수펌프장 및 배기시설의 관리
15. 하수도사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16.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
17. 종합방재계획수립,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,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
18.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및 재난대비 교육·훈련
19.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0. 전시운영계획·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21. 민방위대 설치·조직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
22.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
23.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
24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
25. 운수사업 인·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
26. 교통소통개선사업, 교통시설 설치관리 및 주차시설 설치,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
27.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28. 운수사업체 지도감독, 주·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
29.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30. 노상·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내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사항

제3장 직속기관

제9조(보건소의 설치) ①법 제104조제1항과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10조(보건소장) ①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.

②보건소에 보건위생과,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를 둔다.

③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소관사무) ①보건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

제4장 하부 행정기관

제12조(동의 설치)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 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(직무)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통·반 조직운영, 주민생활지원, 사회복지, 민방위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

제14조(동장) 동에는 동장을 두며,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“생활복지국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하고, 제3호가 목중 “재무국”을 “재정경제국”으로 한다.

②서울특별시종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중 “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”를 “고객만족행정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③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3조제3항제3호중 “동대문”을 “혜화”로, “서대문”을 삭제한다.
2. 별표 종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중 보급(급식)지원반 반장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산업환경과장”으로 하고, “지역경제과, 환경위생과 직원”을 “산업환경과, 보건위생과 직원”으로 하며,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반장 “주무담당주사”를 “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④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⑤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3항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,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⑥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⑦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정부기록보존소”를 “국가기록원”으로한다.

⑧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5조제3항제5호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2. 제8조제2항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⑨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⑩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⑪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재무국”을 “재정경제국”으로 한다.

⑫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제4조제2항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⑬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육성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2조제2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2. 제2조제4항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가정복지과장”으로, “사회복지과”를 “가정복지과”로, “청소년업무담당주사”를 “청소년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⑭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5조제3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2. 제5조제4항중 “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”를 노인복지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⑮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16조제2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2. 제16조제4항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가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3. 제18조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4. 제26조제1항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가정복지과장”으로 하고, “여성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여성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⑯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복지협의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3조제2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2. 제3조제5항중 “사회복지담당팀장 및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를 “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계획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 및 보건소 각과 팀장 중에서 선임한다.”로 한다.

⑰서울특별시종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사회복지담당주사”를 “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⑱서울특별시종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5조제2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, “상공업무담당주사”를 “상공담당주사”로 한다.
2. 제6조제3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3. 제6조제3항제1호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산업환경과장”으로 “환경위생과장”을 “보건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4. 제6조제4항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산업환경과”로 “상공업무담당주사”를 “상공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4조제2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2. 제4조제3항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,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3. 제9조제3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4. 제10조제2항중 “지역경제과장”을 “산업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⑳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5조제2항제1호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보건소장”으로 한다
2. 제5조제2항제2호중 “환경위생과장”을 “보건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3. 제6조제3항중 “식품위생담당국장”을 “보건소장”으로 한다.
4. 제6조제3항제3호중 “환경위생과장”을 “보건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5. 제6조제4항중 “환경위생과”를 “보건위생과”로 한다.

㉑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㉒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1. 제6조제1항제2호중 “재난안전담당주사”를 “재난기획담당주사”로 한다.
2. 제8조제4항중 “재난안전담당주사”를 “재난기획담당주사”로 한다.

㉓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보건행정과장”을 “보건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(별표)

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9조 관련)

| 명 칭 | 위 치 | 관할구역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5번지 30호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역 |